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3. 2. 21.(화)
담당 부서	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 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은향 (02-2100-2691)

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「자산유동화법」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

I 개요

- 정무위원회는 금일(2.21일)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산유동화법’) 개정안(정부안, '21.10.18일)을 의결하였습니다.
 -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
 -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※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, 그렇지 않은 비등록유동화증권(상법 등 근거)으로 구분

II 개정안 주요 내용 (☞ 세부내용 : 참고2)

①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

- (현행) '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으로 등록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,
 - 그 간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*,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활용이 제한**되는 등 일부 대기업(주로 통신사·항공사)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
* '00년 이후 사실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

**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'자산'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,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

□ (개정)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 유동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,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.

○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*¹하고,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*²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* 1: (현행)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(BB등급 이상) → (개정)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(추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구체화 예정)

2: (현행) 채권·부동산 등 중심 → (개정)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

○ 또한,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(SPC)를 허용*¹하고,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*²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.

* 1: (현행) 유한회사로 제한 → (개정)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

2: (현행) 신용정보업자의 경우, 신용평가·신용조회·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 필요 → (개정)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

2 유동화증권 전반(등록+비등록)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

□ (현행)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전체 유동화 증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*하고 있음에도, 유동화계획서 등이 공시 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달리 정보 공개가 미흡한 측면**이 있었습니다.

* ('22.6월말 유동화증권 발행잔액) 등록 228.8조원, 비등록 203.4조원

**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·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·공개 중이나, 법상 의무가 없어 중요정보 누락, 부정확한 정보 등 한계

○ 또한,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주체가 신용도가 낮은 부실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- (**개정**)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, 유동화 증권 전반(등록+비등록)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, 위험분담 의무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.
-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(거래참여기관, 기초자산 등)*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,
 - * 기본 발행내역(발행금액, 만기 등), 거래참여기관(자산보유자, 자산관리자 등), 기초자산, 신용보강정보 등
-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,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 증권 지분을 일부(5%) 보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.(위험보유규제 도입)
 - ※ 미국·EU·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既도입
- 상기 규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, 위반 시 과태료(정보공개 의무 위반)·과징금(위험보유규제 위반)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·제재상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.

III 기대 효과

- (**등록유동화 제도 정비**)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(**리스크 관리 강화**)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,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IV 향후 일정

-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,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,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,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.

참고1

유동화증권 통계 ('22년)

1. 등록유동화 증권 (자료 : 금감원)

- (개괄) '22년중 등록유동화 증권(ABS: Asset-Backed Securities) 발행 금액은 44.0조원이며, '22년말 기준 발행잔액은 230.4조원

< 발행 추이 >

구분	'18	'19	'20	'21	'22
발행금액(연중, 조원)	49.4	51.7	79.1	61.7	44.0
발행잔액(연말, 조원)	186.0	190.8	219.0	228.3	230.4

- (유동화자산) MBS(39.1%), 여신금융채권(25.5%), 기업매출채권(13.7%), P-CBO(12.3%) 등 우량 집합채권 중심으로 발행

< 발행 현황('22년중) >

구분	대출채권			매출채권		P-CBO	계
	MBS	기업·개인 여신	부동산 PF	여신금융 ¹⁾	기업 ²⁾		
발행금액(조원)	17.2	3.3	0.8	11.3	6.0	5.4	44.0
비중(%)	39.1	7.5	1.9	25.5	13.7	12.3	100.0

1) 신용카드매출채권, 자동차할부채권, 리스료채권 등

2) 단말할부대금채권, 항공운임채권, 휴대폰소액결제대금채권 등

2. 비등록유동화 증권 (자료 : 예탁결제원)

- (개괄) '22년중 비등록유동화 증권(ABCP, AB단기사채, AB사채) 발행 금액은 522.0조원이며, '22년말 기준 발행잔액은 167.1조원

< 발행 추이 >

구분	'18	'19	'20	'21	'22
발행금액(연중, 조원)	337.4	403.9	418.7	479.1	522.0
발행잔액(연말, 조원)	154.4	189.9	189.5	222.6	167.1

-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차환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유동화에 비해 발행금액은 크지만 발행잔액은 비슷

- (유동화자산) 정기예금(45.1%)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, 부동산 PF(25.5%), 대출채권 유동화(11.2%)도 활발한 상황

< 발행 현황('22년말, 잔액기준) >

구분	정기예금	대출채권	매출채권	부동산PF	기타 ¹⁾	계
발행잔액(조원)	75.4	18.7	5.4	42.7	24.9	167.1
비중(%)	45.1	11.2	3.3	25.5	14.9	100.0

1) 회사채, 신용파생, 수익증권 등

가.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

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(안 제2조제2호)

- **(현행)**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(BB등급 이상)*을 두고 있어,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

*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'자산'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,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

- **(개선)**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폐지*

* 단,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'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'로 제한 예정 (하위 규정에서 구체화)

②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(안 제2조제3호, 제3조제2항)

- **(현행)** 유동화 대상자산을 “채권·부동산 기타의 재산권”으로 정의 하여, 장래자산·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

- 또한, 복수의 자산보유자(유동화증권 발행기업)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 존재

*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·회사채 유동화시,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→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,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

- **(개선)**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,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

-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'장래에 발생할 채권', '지식재산권'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,

-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*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-seller 유동화를 명시적으로 허용

③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(안 제6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,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- **(개선)** 유동화전문회사(SPC)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등록의무를 완화(의무→임의) 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 완화

< 주요 개선내용 >



구분	개선내용
① 자산보유자 → SPC	현행 유지(의무등록)
② SPC → 자산보유자	의무등록→임의등록
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	의무등록→임의등록

- *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: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
- *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설정 : 법률상 실익 無 (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)

④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(안 제10조, 제11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*로 한정, 「신용정보법」상 허가를 받은 경우 신용평가·신용조회·신용조사·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음

* ①자산보유자, ②전문자산관리회사, ③「신용정보법」상 허가를 받은 자

-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이 있으므로* 신용평가·신용조회·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

* 채무 변제요구, 담보물 경매신청,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

- **(개선)**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*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

*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

- 다만,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·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, 채권추심 업무 시 「신용정보법」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함

5 「자산유동화법」상 인센티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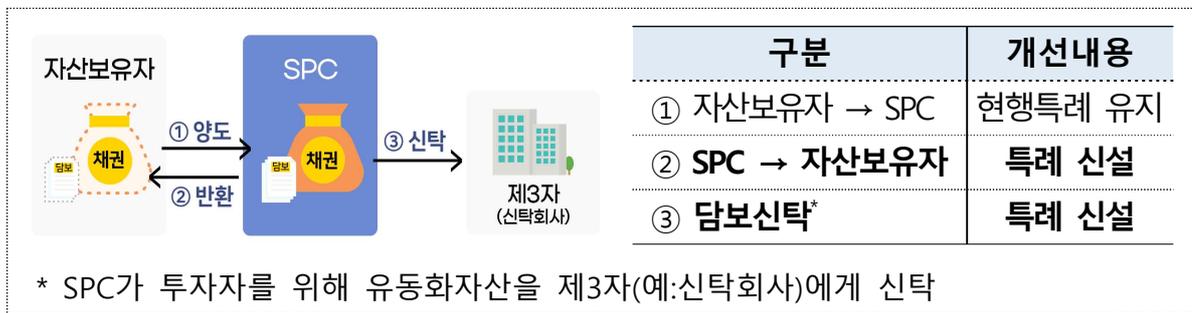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*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,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함

*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(§7), 저당권등 취득 특례(§8), 이익배당·자본변동 특례(§30) 등

- **(개선)**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취득 특례*의 범위를 확대하여, 질권·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 (안 제8조)

*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·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(기초자산)을 양도하는 경우,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·저당권 취득

< 주요 개선내용 >



- 유동화전문회사(SPC)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¹⁾하고,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²⁾됨을 명시 (안 제17조, 제30조)

* ¹⁾ (현행)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→ (개선)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(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('09년)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)

²⁾ (현행)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→ (개선) 명목상 회사(paper company)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

- 기초자산 관련 정보(채무자 정보)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(안 제37조)

* (현행)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(채권)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(§4) 적용 배제

(개선)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(§32, 33 등)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

나. 리스크 관리 강화

①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(안 제33조의2, 제42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·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,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**임의공시***로 운영되고 있어 **중요정보 누락, 부정확한 정보 공시** 등 한계가 존재

*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·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·공개

- **(개선)** 유동화증권 발행시 **발행 관련 정보***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 정립 (위반시 과태료 부과)

* (예) 발행내역(발행금액, 만기 등), 거래참여기관 정보(자산보유자, 실질 자금조달자, 자산관리자 등), 기초자산 정보, 신용보강 정보 등

② 자산보유자 등의 위험분담 의무화 (안 제33조의3, 제38조의3 등)

- **(현행)**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**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하여,**

-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,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(투자자와의 이해상충).

- **(개선)**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**책임성 제고**를 위해, 유동화증권의 **신용위험을 분담(5% 수준의 지분 보유)**토록 함

※ 미국·EU·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既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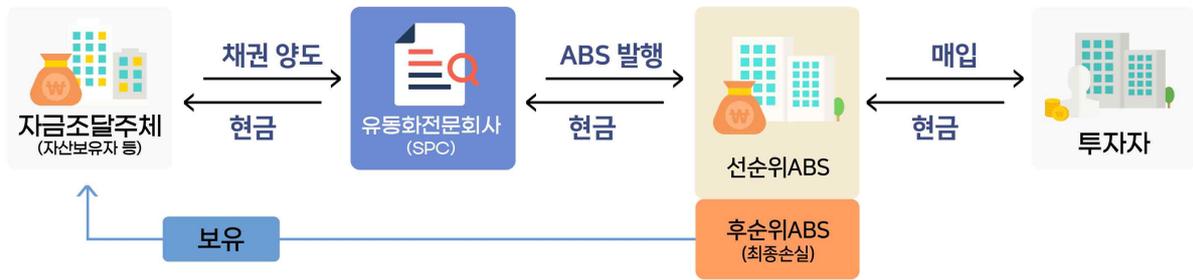
- 다만,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**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,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*** 등에 대해서는 **규제 적용 면제**

* (예)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(MBS),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%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

- **규제의 실효성 제고**를 위해 **위험분담 정보를 공개**하고, **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***

* 고의·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,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% 범위(20억원 한도)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

< 위험분담 예시 :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>



※ 규제 면제·완화 대상, 위험분담 방식, 위험분담 정보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예정

다. 기타 : 정무위 수정사항 주요 내용

①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신설 (제34조)

- 개정안에 신설된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규율*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,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현행 등록유동화 외에 비등록유동화로 확대

* 정보공개 강화, 위험분담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, 과징금 부과

② 과징금 부과권한의 금융위→증선위 위임 (제38조의3)

- 절차상 중복 최소화를 위해 과징금(위험보유규제 위반 시) 부과권한을 금융위→증선위로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※ (참고)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의 경우,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권한을 증선위에 위임

③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 구체화 (제33조의2)

-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* 규정

* 유동화증권의 종류·총액·발행조건 등 발행내역, 유동화자산·자산보유자 등 유동화 관련 정보